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10. 16)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수도시설과장 오응완)

□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「수도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370호, 2007. 4. 11. 공포·시행)되어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수도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)
 - · 「수도법」제23조 → 제38조
-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 - 없 음
-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- 5. 심사결과
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의 요지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수도법」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수도법」제38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 중 "한하여"를 "한정하여"로 하고, "단"을 "다만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부천시 한강취수장"을 "한국수자원공사 팔당취수장"으로 하고, "단"을 "다만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(별표1)의 사용료요율표에 의한"을 "별표의 사용료요율표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「부천시수도급수조례」"를 "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로 한다.

제7조 중 "시행에 관하여 필요한"을 "시행에 필요한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495호 의 결 2009. 11. 23. 년월일 (제157회)

제출년월일: 2009. 10. 5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「수도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370호, 2007. 4. 11. 공포·시행)되어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.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「수도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)

· 「수도법」제23조 → 제38조

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수도법」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수도법」제38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 중 "한하여"를 "한정하여"로 하고, "단"을 "다만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부천시 한강취수장"을 "한국수자원공사 팔당취수장"으로 하고, "단"을 "다만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(별표1)의 사용료요율표에 의한"을 "별표의 사용료요율 표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「부천시수도급수조례」"를 "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」로 한다.

제7조 중 "시행에 관하여 필요한"을 "시행에 필요한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</u> 「수도 | 제1조(목적) 「수도법」 |
| 법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| 제38조에 따라 |
| 부천시공업용수도의 용수공급에 | |
|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| |
| 으로 한다. | |
| 제2조 (급수구역) 급수구역은 공 | 제 2 조 (급 수 구 역) |
| 업용수도 용수공급시설이 설치 | |
| 된 지역에 한하여 공업용 배수 | |
| 관으로부터 공업용수를 받고자 | -1 -1 -1 .1 |
| 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. | <u>한 정 하 여</u> |
| 단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| |
| 때에는 타지역에도 공급할 수 | 만 |
| 있다. | |
| 제4조 (용수의 수질) 공업용수는 | · 1] 4 7 (0 |
| 부천시 한강취수장에서 취수한 | M4五(3 1 1 1 包) |
| 원수를 공급한다. 단, 필요시 1 | <u>한국수자원공사</u> |
| 차 침전된 원수를 공급할 수도 | 되 다 하 수 하 |
| 있다. | |
| 제5조(사용료) 급수사용자에 대하 | 다만 . |
| 여는 (별표1)의 사용료요율표에 | |
| 의한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| 제5조(사용료) |
|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에 해당하 | 별표의 사용료요율표에 따 |
| 는 사용료를 매월 징수한다. | 른 |
| 제6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| |
| 것을 제외하고는 「부천시수도 | 제 6 조 (준 용) |
| 급수조례」를 준용한다. | |
| 제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| |
|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| <u>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</u> 」 |
| 으로 정할 수 있다. | |
| | 제7조(시행규칙)시행 |
| | 에 필요한 |
| | |
| | |

<관계 법령발췌서>

○ 수도법

제38조 (공급규정)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,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(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제65조에서 같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